

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2244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2월 25일
제안자 : 교통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송도호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 제1900호), 이승미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 제2104호),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(2021.2.26.)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,

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2건의 개정조례안 내용을 통합·보완하여 「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」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함

2. 대안의 제안사유

- 송도호 의원 외 9명 및 이승미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시내버스를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도입하는 경

우 시장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경쟁환경을 장려하고 자율경쟁을 통한 성능 개선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조례에 명시하고, 시장이 사업자에게 시내버스 차량 내 위생, 방역 등의 안전조치를 명하는 한편 버스승객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, 사업자가 여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운송을 거부하거나, 승차 승객을 하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인 바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·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함

3. 대안의 주요골자

- 가. 친환경차(전기·수소버스) 도입을 위한 별도의 지원시책 수립 시 반영할 지원기준을 신설함(안 제9조제6항 후단신설)
- 나. 시장은 사업자에게 시내버스 차량 내의 위생, 방역 등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(안 제9조제7항 신설)
- 다. 시민은 쾌적하고 친절한 시내버스를 이용할 권리 및 정해진 안전수칙 준수하며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(안 제10조의 2 신설)
- 라. 사업자가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운송을 거부하거나, 이미 승차한 승객을 하차하도록 할 수 있음(안 제11조제7항 신설)

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 환경 장려, 자율경쟁을 통한 성능 개선 및 가격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.

제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시장은 사업자에게 시내버스 차량 내의 위생, 방역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시민의 권리와 의무) ① 시민은 쾌적하고 친절한 시내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시민은 시내버스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, 정해진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.

③ 시민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시내버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,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.

1. 시내버스 내의 위생,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
2. 사업자 및 시내버스 운전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·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
3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
4.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교통위원회 대안
<p>제9조(시장의 책무)</p> <p>① ~ ⑤ (생략)</p> <p>⑥ 시장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기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로 신규 시내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후단신설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	<p>제9조(시장의 책무)</p> <p>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이 경우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 환경 장려, 자율경쟁을 통한 성능 개선 및 가격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.</u></p> <p><u>⑦ 시장은 사업자에게 시내버스 차량 내의 위생, 방역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10조의2(시민의 권리와 의무) ①</u> <u>시민은 쾌적하고 친절한 시내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.</u></p> <p><u>② 시민은 시내버스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, 정해진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시민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11조(안전운행 방안)</p>	<p>제11조(안전운행 방안)</p>

현행	교통위원회 대안
<p>① ~ ⑥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	<p>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시내버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,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내버스 내의 위생,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. 사업자 및 시내버스 운전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·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 4.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